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재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l jy@kiep.go.kr, Tel: 3460-1089)

김영귀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y gkim@kiep.go.kr, Tel: 3460-1188)

박지현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 hpark@kiep.go.kr, Tel: 3460-1136)

강준구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 gkang@kiep.go.kr, Tel: 3460-1058)

김정곤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 gkim@kiep.go.kr, Tel: 3460-1093)

금혜윤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 ykeum@kiep.go.kr, Tel: 3460-1205)

민지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j ymin@kiep.go.kr, Tel: 3460-1095)

차 례 ●●●

1. 러시아 WTO 가입의 의미
2. 러시아의 WTO 양허안 분석
3. 한국의 대러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4. 한·러 경제협력 증진방안

주요 내용 ●●●

- ▶ 2011년 12월 15~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될 것이 확실시되는바,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WTO 가입은 러시아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시장경제의 제도적 완성 및 경제통상의 지평을 확대하여 러시아가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 GDP 및 대러 수출증대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는 않겠지만, 대러 직접 투자는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전체 상품에 대해 현재 10%인 MFN 평균 실행관세율에 비해 22% 감축된 7.8%로 양허함.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01%, 대러 수출은 약 3,2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관세감축 대상이 적고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함.
 - 농업은 대러 상위 수출품목 대부분의 실행세율이 WTO 양허세율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관세인하에 따른 소폭의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제조업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해온 까닭에 관세감축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관세인하폭이 큰 일부 품목의 수출증가가 기대됨.
 - 서비스업의 경우 러시아가 116개 업종에 대해 양허함에 따라 서비스 교역·투자의 안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협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법적·제도적 투명성이 현저히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한국의 대러 투자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한·러 협력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신(新)복합전략을 추진해 나아가야 함.
 - 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제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됨.
 - 특히 전략적 상품인 에너지자원 확보, 남·북·러 가스관 건설 및 전력망 연계, 대륙철도 연결 등 물류교통 연계사업은 정치·경제적 복합전략하에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보다도 법적·제도적 투명성 제고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대러 경제협력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바, 유망 수출품목 발굴, 대러 에너지 수입 및 서비스 교역확대, 상호 수평적 투자협력 추진, 극동지역 개발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
 - WTO 가입 이후 대러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러시아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간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한·러 FTA 추진이 필요함.

1. 러시아 WTO 가입의 의미

- 2011년 12월 15~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될 것이 확실시되
는바, 러시아는 2012년 상반기에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임.
 - 올해 11월 WTO 가입 작업반 회의에서 러시아의 가입이 승인되어 약 18년간 진행된 협상이 사실상 완료됨.
 - 올해 12월 중순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승인되면, 러시아는 의회 비준절차를 거쳐
늦어도 2012년 상반기에 WTO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G20 국가 중 유일하게 미가입국이던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WTO가 세계무역의 99%를 관장하게 됨.
- WTO 가입은 러시아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시장경제의 제도적 완성 및 경제통상의 지평을
확대하여 러시아가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이는 우선 러시아의 국제시스템 편입을 절차적으로 완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이 현저히 증
대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여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을 의미함.
 - 국제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8의 일원이고, 국제경제 분야에서는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이제 러시아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이자 행위자가 되고자 할 것임.
 - 미국, EU를 비롯한 약 30개국에서 받던 차별조치가 폐지되어 러시아의 수출환경이 개선되고 경제통상 지평
이 확장되면서 교역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WTO 가입은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더불어 EU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 자유무
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촉매제가 될 것임.
-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은 매우 밝은데, 향후 10년 안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5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경상가격 기준 러시아의 GDP는 1조 4,175억 달러로 세계 GDP의 2.45%, 교역액은 6,732억 달러(수
출 4,000억 달러, 수입 2,732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2.12%를 차지함.¹⁾
 - 러시아과학원 IMEMO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2030년에 세계 GDP의 3.7%를 점유하여 GDP 규모에서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에 오르고, 1인당 GDP는 4만 5,9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표 1 참고).

표 1. 러시아의 경제력 변화 전망

(단위: 달러)

지표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대세계 인구 비중(%)	2.4	2.1	1.9	1.8
대세계 GDP 비중(%)	3.3	3.7	3.6	3.7
세계 GDP 순위	9	6	5	4
1인당 GDP(달러)	12,100	19,700	29,800	45,900

주: GDP는 2009년 PPP 기준 가격으로 산정

자료: 러시아과학원 IMEMO(2011, 6),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глобальный прогноз 2030』 (전략적 글로벌 전망 2030), Moscow: Master..

1) UNCTAD(2011).

- 요컨대,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의 창' 이 열림을 의미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대러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및 협력방안 수립이 시급함.

2. 러시아의 WTO 양허안 분석

가. 농산물

-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 광범위한 품목의 관세인하에 합의하였는데, 농산물의 경우 유제품은 14.9%(현행 실행관세 19.8%), 곡물류 10%(현행 실행관세 15.1%), 유지종자 7.1%(현행 실행관세 9%)로 관세가 인하됨.
- WTO 가입과 동시에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와 일부 유장 제품에 대한 관세할당(TRQs) 제도가 실시됨.
 - 쇠고기의 경우 쿼터내물량(in-quota) 세율은 15%, 쿼터를 초과하는 쿼터외물량(out of quota) 세율은 55%가 적용되며, 돼지고기는 쿼터내물량 세율 0%, 쿼터외물량 세율 65%가 적용됨.
 - 일부 가금류는 쿼터내물량 세율 25%, 쿼터외물량 세율 80%가 적용되며, 일부 유장 제품의 경우 각각 10%, 15%가 적용됨.
 - 돼지고기에 대한 쿼터는 2020년 철폐될 예정이나, 쇠고기 및 가금류의 쿼터 폐지시한은 결정되지 않음.

표 2. 관세할당(TRQs) 제도하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수입허용량

(단위: 톤)

품목	HS Code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쇠고기 (신선냉장)	0201	27,800	28,300	28,900	29,500	30,000	
쇠고기 (냉동)	0202	435,000	440,000	445,000	450,000	530,000	530,000
돼지고기	0203	476,100	511,300	521,500	531,900	500,000	499,900
가금류	0207	1,130,800	1,171,200	1,211,600	952,000	780,000	350,000

자료: WT/ACC/SPEC/RUS/25/Rev.6.

- 한편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무역왜곡적인 총 농업보조금을 2012년에 90억 달러로 제한하고, 2018년까지 44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함.
 - WTO 가입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별 품목에 대한 지원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연간 농업보조는 농업보조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WTO 가입과 함께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고, 일부 국내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철폐함.

나. 제조업 및 제조업 교역 관련

■ WTO 가입에 따른 러시아의 제조업 평균 양허세율은 7.3%로, 2011년 평균 실행세율(9.5%)과 비교하여 약 23% 감축된 수준임.

-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제조업의 관세율 인하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는 WTO 가입 협상을 시작한 이후 18년간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해 왔기 때문에 이번 양허세율에 따른 전반적인 대(對)세계 수입증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한국의 대러 10대 수출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실행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을 보면 [표 3]과 같음.

표 3.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2011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HS 6단위)	품목명	2011년 수출액*	비중	2010년 MFN 실행세율	WTO 양허 세율****
1	870323	1,500~3,000cc 이하 승용차	1,154.7	13.2	0.0	17.8
2	870899	기타 트랙터 특수차량부품	911.1	10.4	2.0	5.0
3	890590	기타 특수차량	607.3	7.0	10.0	12.5
4	870332	1,500~2,500cc 이하 승용차	451.2	5.2	0.0	13.3
5	870322	1,000~1,500cc 이하 승용차	404.8	4.6	0.0	12.9
6	842952	360도 회전 상부구조 기계	315.6	3.6	5.0	5.0
7	852990	TV 등 전자기기 부품 기타	253.5	2.9	7.0	0.5
8	870210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171.3	2.0	8.9	9.1
9	870421	중량 5톤 이하인 화물차	151.5	1.7	22.0	11.4
10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149.5	1.7	5.0	4.0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 합계			4,570.4	52.3	6.0**	9.0**
대러시아 총수출 합계			8,731.7	100.0	9.5***	7.3***

주: * 2011년은 1~10월간 수출액의 합계임

** 10대 수출품목의 2010년 실행세율 및 양허세율의 평균임

*** 전체 제조업 품목의 2010년 실행세율 및 양허세율의 평균임

**** 미양허 품목 및 종량세 적용 품목은 제외한 평균치로서, 단계적 양허품목의 경우 최종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단순 평균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WITS(러시아의 MFN 실행세율); 러시아의 WTO 가입양허안(러시아의 양허세율).

■ 한편 러시아는 광물성 연료 및 석유 목재, 펄프 및 종이, 수산물 그리고 비금속 광물 등 700여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세를 양허함.

표 4. 러시아의 주요 수출세 양허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1년(1~10월)		현행 세율**	감축 세율	이행 기간	비고
			수입액	비중*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	2,909	33.15	***		-	-
3	271111	천연가스	834	9.51	21%, 40유로/1,000kg 이하		-	-
4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715	8.15	****		-	-
5	720449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369	4.21	15%, 15유로/1,000kg 이상	5%, 5 유로/1,000kg 이상	5	-
6	760110	비합금 알루미늄	327	3.73	5	0	4	-
7	760120	알루미늄 합금	312	3.56	5	0	4	-
9	030379	기타	210	2.39	5	0	4	-
12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113	1.29	5	0	4	-
13	030380	간과 어란	76	0.87	5	0	4	-
16	440710	침엽수류	54	0.62	3%, 2.5유로/1m³ 이상	0	4	-
18	030352	대구	41	0.47	5	0	4	-
20	030614	계	37	0.42	10	0	4	-
21	470311	화학목재펄프	35	0.40	10	0	4	**** *
22	271019	기타	34	0.39	****		-	-
25	470321	침엽수류의 것	31	0.35	10%, 40유로/1,000kg 이상	0	4	**** *
27	710490	기타	30	0.34	6.5	0	4	**** *
28	030624	계	28	0.32	10	0	4	-
상기 품목의 총계			6,155	70.17	-	-	-	-

주: * 대러시아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 WTO 가입 즉시 적용되는 수출세율임.

*** 해당 품목의 수출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함.

원유의 세계 가격(world price)	수출세율
<= 109.5 USD/t	0
>109.5, 단, <=146 USD/t	<= 0.35 (세계가격 - 109.5) USD/t
>146, 단, <=182.5 USD/t	<= 12.78 USD/t + 0.45(W.p. - 146) USD/t
>182.5 USD/t	<= 29.2 USD/t + 0.65(W.p. - 182.5) USD/t

**** 해당 품목의 수출세율(Xd)은 다음과 같이 정함. $X_d = C * X_{dco} / (X_{dco} + C)$ (Xd는 위의 표와 같이 정한 원유의 수출세율, C는 계수. 계수 값은 러시아의 WTO 가입 양허안 참고)

***** 이행 기간 마지막에 수출세를 철폐함

자료: 러시아의 WTO 가입 양허안(HS 10단위 구분을 6단위로 조정하여 정리).

■ 또한 러시아는 이행기간 없이 WTO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로 함.

-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AP)은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를 주요 지식재산권 위반국으로 주목하고 있음. 예컨대 2009년 러시아 내 소매시장 판매상품의 24%가 위조품으로 알려졌고, 2010년에 러시아에서 총 6,118건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밝혀진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는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광디스크 불법복제 금지, 인터넷 복제 금지, 의약품 테스트데이터 보호,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복제 처벌에 대한 국가간 협조 강화 등에 대한 법률을 2007년 입법화하였으며, 미국과는 양자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을 국제수준으로 올리기로 약속한 바 있음.²⁾

2) 이재영 외(2007),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러시아는 WTO 가입을 계기로 웹사이트(서버가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를 통해 배포되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 및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함.
- 2011년 12월 러시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 기능을 할 지식재산권 중재 재판소 설립에 대한 대통령령이 발효되었으며, 늦어도 2013년 2월부터는 개소될 예정임.

■ 2013년 7월 1일까지 러시아 내에서 철도로 운반되는 수입품에 대해 국내물품과 동일한 운송료를 부과함.

- 러시아는 WTO 가입 협상 중 회원국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높은 운송료를 부과하는 국내 법률을 개정하였고, 2009년 말 현재 약 87%의 철도 화물에 대해서 국내물품과 수입품에 동일한 운송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짐.³⁾

■ 러시아는 SPS(식품위생검역협정) 및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규정을 WTO 협정 및 국제표준에 조화되도록 하고, WTO 가입 후 4년 안에 정부조달협정(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함.

■ 또한 WTO 가입 즉시 알코올류, 의약품, 암호화 기술과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러시아는 연방법에 의하여 알코올 음료, 의약품, 암호화 기술이 포함된 제품, 핵물질, 폭발물, 일부 식료품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해 왔음.

다. 서비스업

1) 주요 양허 내용

- 러시아는 116개 업종에 대해 양허함에 따라 서비스 교역·투자의 안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제고됨.
- 러시아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기준으로 총 26개 업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하고, 그 외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양허함.
- 국경간 공급(mode 1)과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해서는 주로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하였는데, 특히 상업적 주재에 대한 제한은 대부분 법인 형태의 설립을 요구하는 요건임.

가) 통신서비스

- 15개 전 업종 가운데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등 3개 업종은 제한 없이 양허하고, 그 외의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12개 업종은 제한을 두고 양허함.

3) WTO(2011),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Party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SPEC/RUS/25/Rev.6, p. 39.

- 제한을 두고 양허한 12개 업종 가운데 국경간 공급에 대해 라디오방송서비스와 위성방송서비스(일부 제외 또는 3년간 철폐 약속)는 미양허하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법인 요건, 외국인의 의결권 지분참여 제한(WTO 가입 후 4년 동안 49%로 제한)을 둬.
-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상업적 주재의 경우 설립형태(법인), 지분제한(49%, 5년차부터 철폐) 요건을 두고 양허하고 있음.

나) 건설서비스

- 내국민대우상 일부 분야(국가정체성,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과 정부 지원은 존재하나, 시장접근 상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간 공급을 미양허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모든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함.

다) 유통서비스

- 도매업의 경우 의약품, 의료기기, 알콜류 등을 제외하고 mode 1, 2, 3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양허함. 단,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법인 형태로만 가능함.
- 소매업도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불허하고, 그 외에 식품 및 비식품 취급, 자동차(부품, 악세서리 포함), 모터사이클, 주유소 등을 양허함. 단, 상업적 주재는 법인 형태만 가능하며,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도 도소매업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국경간 공급을 미양허하고 있어 양국의 양허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라) 금융서비스

- 보험서비스와 은행서비스 전 분야(기타금융서비스 제외)를 양허하였으나, 국경간 공급(특정 분야·거래 형태 등을 제한)과 상업적 주재(설립형태·지분 제한, 허가요건 등)에 다양한 제한 요건을 둬.
- 한·러 간 업종별 기재방식이 상이하고, 주요 기재사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외국인의 러시아 금융서비스 투자와 외국 금융기관 지점·사무소의 사업 활동은 제한적으로 가능함.

마)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와 도로운송서비스(차량임대 제외), 운송보조서비스(화물취급, 창고, 화물중계, 기타운송보조)를 제한적으로 양허, 항공운송서비스와 철도운송서비스는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양허함.
- 여타 WTO 회원국의 해운서비스 양허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주요 제한도 법인 형태를 요구하거나 일부 지분을 제한, 선박 등록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수준임.
- 단, 러시아의 양허 내용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국제해상운송서비스 분야에서 러시아의 양허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반대로 도로운송서비스 분야는 러시아의 양허수준이 더 높음.

2) 한·러 양국의 WTO 양허수준 비교

- 양국의 서비스 양허표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총 110개, 러시아는 총 116개 업종을 양허하고 있어 러시아의 양허 업종이 더 많음.
- 그러나 제한 없이 양허를 한 업종 수는 우리나라가 37개 업종, 러시아가 26개 업종으로 우리의 양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5. 한·러 양국의 양허 업종 수 비교(시장접근 기준)

	업종 수	한국(DDA 수정양허안, 2005년)			러시아(WTO 가입, 2011년)		
		양허 업종 수	제한 없음		양허 업종 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제한 없음	제한 있음
1. 사업서비스	46	40	21	19	43	17	26
2. 커뮤니케이션	24	18	9	9	19	3	16
3. 건설	5	5	0	5	5	5	0
4. 유통	5	4	1	3	4	1	3
5. 교육	5	2	0	2	4	0	4
6. 환경	4	3	1	2	4	0	4
7. 금융	17	16	0	16	16	0	16
8. 보건의료	4	0	0	0	1	0	1
9. 관광	4	3	2	1	3	0	3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5	1	0	1	2	0	2
11. 운송 ²⁾	37	18	3	15	15	0	15
12. 기타 서비스	1	0	0	0	0	0	0

자료: WTO(2005), S/DCS/W/KOR; WTO(2011), WT/ACC/RUS/70/ADD.2(WT/MIN(11)/2/ADD.2).

- 한국의 양허수준이 더 높은 업종과 러시아의 양허수준이 더 높은 업종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음.

4) 우리나라의 DDA 수정양허안(revised offer)(2005)과 러시아의 WTO 가입 양허안(2011)을 상호 비교함.

표 6. 한·러 양국의 서비스 양허수준 비교

업종	한국의 양허수준이 더 높은 업종	러시아의 양허수준이 더 높은 업종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g.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 러시아 부분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h. Medical and dental services i. Services provided by midwives, nurses, physiotherapists and para-medical personnel k. Other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
	C. R&D 서비스 a. R&D services on natural sciences c. Interdisciplinary R&D services * 러시아 미양허, 한국 부분양허	
	E. 렌탈, 리스 서비스 a. Relating to ships * 러시아 부분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F. 기타 사업서비스 f. Services incidental to agriculture, hunting and forestry g.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q. Packaging services s. Convention services * 러시아 부분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j. Services incidental to energy distribution l. Investigation and security o. Building-cleaning services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빌딩 청소는 제한 없이 양허)
2. 선 커뮤니케이	C. 통신 * 기간통신서비스는 양허표 내용만으로 직접비교 곤란 부가통신 중 2 C, h(Electronic mail)부터 2 C o(Other)까지 총 8개 업종 * 러시아 부분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d. Telex services e. Telegraph services f. Facsimile services * 한국 부분양허, 러시아 제한 없이 양허
	D. 시청각 a.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 러시아 부분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e. Sound recording * 러시아 미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b. Motion picture projection service c. Radio and television services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
3. 건설		3 A ~ 3 E, 전분야(5개 업종) * 한국은 mode 1 미양허, mode 2, 3 제한 없이 양허, 러시아는 제한 없이 양허
5. 교육		A. Primary education services B. Secondary education services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
6. 환경	D. Other * 러시아 부분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C.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
7. 금융		* 금융서비스는 양허표 내용만으로 직접비교 곤란
9. 관광	B. Travel agencies and tour operators services C. Tourist guides services * 러시아 부분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B. News agency services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
11. 운송	A. 국제해상운송 c. Rental of vessels with crew d. Maintenance and repair of vessels e. Pushing and towing services f. Supporting services for maritime transport * 러시아 미양허, 한국 부분양허(B, A, c. 제한 없이 양허)	
	B. 연안운송	f. Supporting services for internal waterway transport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
	C. 항공운송	* CRS 판매 및 마케팅 * 러시아 부분양허, 한국 제한 없이 양허
	E. 철도운송 a. Passenger transportation b. Freight transportation * 러시아 미양허, 한국 부분양허(현행 사업자에 대한 투자 금지, 신규 사업자 설립은 ENI 적용)	d. Maintenance and repair of rail transport equipment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
	F. 도로운송	a. Passenger transportation d. Maintenance and repair of road transport equipment e. Supporting services for road transport services * 한국 미양허, 러시아 부분양허
	G. 파이프라인 운송 a. Transportation of fuels 중 유류제품 * 러시아 미양허, 한국 부분양허(mode 1, 2 미양허, mode 3만 양허)	
	I. 기타운송	* 철도운송 화물 포워딩 서비스만 양허(mode 1 미양허, mode 2, 3 제한 없이 양허)

주: 1~, A~, a~ 기호는 W/120 서비스 업종분류 코드를 나타냄.

자료: WTO(2005), S/DCS/W/KOR; WTO(2011), WT/ACC/RUS/70/ADD.2(WT/MIN(11)/2/ADD.2).

3. 한국의 대러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의 WTO 상품 양허안을 토대로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러시아는 전체 상품에 대해 2011년 현재 MFN 평균 실행관세율 10%에 비해 22% 감축된 7.8%로 양허함.
- 추정 결과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실질 GDP는 추가적으로 각각 약 0.001%, 약 0.0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후생수준은 우리나라 약 1,300만 달러, 러시아 약 3억 8,000만 달러가 추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실질 GDP 및 후생 효과

한국		러시아	
실질 GDP(%)	후생(백만 달러)	실질 GDP(%)	후생(백만 달러)
0.001	12.91	0.073	379.73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3,2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관세감축 대상이 적고 러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함.
 - HS 6단위 5,052개 품목 중에서 2010년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양허한 품목은 126개에 그침.
 - 126개 품목에서 한국이 러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그침.
- 우리나라는 우선 관세인하 효과로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농산물 상위 수출품목 대부분의 실행세율이 WTO 양허세율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이들 품목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대가 예상되나, 농산물 주요 품목의 대러 수출비중이 미미하여 수출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표 8. 대러시아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의 실행·양허관세 비교

HS code	품목명	수출금액 (천 달러)	비중 (%)	실행세율 (%)	양허세율 (%)
210390	소스용·혼합조미료·겨자의 분 조제품(기타)	28,975	0.33	15	6
21069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기타)	27,108	0.31	14.17	9.25
210112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10,166	0.12	15	11
190110	유아용의 조제식료품	8,957	0.10	5	5
1904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7,091	0.08	15	10
240120	잎담배(주맥 제거한 것 해당)	6,861	0.08	5	4.9
대러시아 총수출 합계		8,731,714	100.0		

주: 1) 수출품목 순위는 2011년(1~10월) 기준. 상위 수출품목 중 종량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제외함.

2) 실행관세는 러시아의 2010년 MFN 평균관세율로 HS6 단위임. 허관세는 WTO 양허세율로 HS10 단위 품목의 관세를 HS6 단위로 단순 평균한 것임(종량세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WITS.

■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관세인하폭이 큰 품목은 TV 등 전자기기의 부품류와 화물차(5톤 이하) 등으로, 이들 일부 제한된 품목의 경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표 3 참고).

- 최대 수출증가 예상 품목은 5톤 초과 20톤 미만 화물차(870422)로, 약 2,8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표 9 참고).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 1위 품목인 1,500~3,000cc 승용차의 경우 2010년 실행세율이 0.0%인 반면, WTO 양허세율은 17.8%이기 때문에 수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표 9.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증가 효과

HS 6단위	산업	WTO 양허세율 (%)	2010년 MFN 세율(%)	2010년 러시아의 대한민국 수입 비중(%)	2010년 러시아의 대한민국 수입액 (천 달러)	수출증가 예상액 (천 달러)
870422	자동차	11.7	25.0	28.70	86,790.19	27,921.77
870421	자동차	11.4	22.0	2.03	18,569.96	1,408.73
481092	기타제조업	5.0	12.5	2.22	8,201.39	921.30
730511	철강금속	9.0	13.0	5.07	28,210.59	546.85
721933	철강금속	5.0	6.7	25.04	21,443.93	309.22
481910	기타제조업	10.0	15.0	1.62	999.79	256.38
481920	기타제조업	10.0	15.0	1.36	3,137.52	153.96
870423	자동차	10.8	22.5	0.18	2,334.11	133.47
합 계				1.57	198,653.40	32,198.23

주: 합계는 MFN 관세보다 낮은 세율로 양허된 126개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임.

■ 한편 우리나라의 대러 30대 수입품목(2011년 기준) 가운데 수출세 양허품목의 금액비중은 약 70%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는 석유 및 역청유, 천연가스,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 주요 원자재와 수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이들 품목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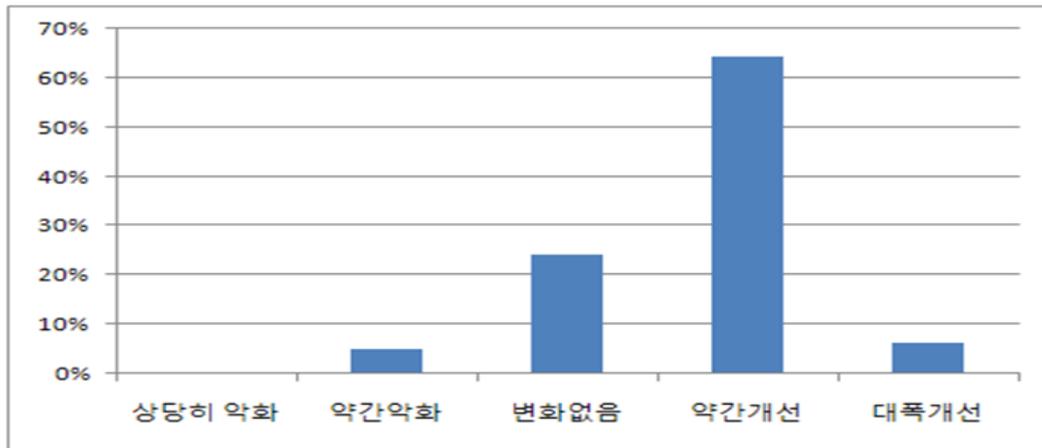
■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확대되는바, 한국의 대러 서비스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 러시아가 시장접근상 아무런 제한 없이 건설서비스 분야를 양허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대러 건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출 증대가 예상됨.
- 유통서비스 분야의 양허로 인해 대형할인점, 주유소 등의 진출 가능성이 확보됨.
- 보험 및 은행서비스 분야의 진출 또한 보다 용이하게 되었음.

■ 요컨대,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 GDP 및 대러 수출증대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는 않겠지만, 대러 직접투자는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가 116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양허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던 2008년 말 우리의 대러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러시아에 대해 매력적인 시장이자 우리의 중요한 투자대상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의 70%가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53%는 향후 진출확대를 계획함.

그림 1.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 전망



주: 조사대상 한국기업은 모스크바 주재 29개,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17개로 총 46개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문자료(2008. 12).

4. 한·러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 수교 이래 지난 21년 동안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경제협력의 폭도 농업,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왔음.
- 수교 초기 연간 10억~20억 달러 수준이던 양국의 교역량은 2010년 약 17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당시 연간 1천만~2천만 달러에 머물던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도 2008~10년에는 3억~4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2010년 러시아는 한국의 11대 교역대상국, 16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
 - 특히 한국의 대러 수출품목이 다양해졌고, 대러 투자진출도 확대되면서 투자업종도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건설, 금융, 부동산, 자원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양국간 경제협력 수준은 2010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세계 14위와 11위 경제대국인 한국과 러시아의 잠재력에 비해 매우 미흡함.
 - 한국의 대외무역과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중국, 일본 등의 경쟁국들에 비해 한국의 대러 자원개발 및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실적 또한 미흡한 실정임.
 - 러시아 경제규모의 1/10에 불과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 누계액은 2010년까지 18억 달러로,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 누계액(17억 3,00만 달러)보다 오히려 많은 상황임.
- 양국간 경제협력이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 러시아에 대한 정보부족, 언어장벽, 현지 네트워크 부족, 러시아 시장에 대한 과소평가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 러시아 측에서는 팽배한 관료주의 등 높은 행정장벽, 까다로운 통관절차, 복잡한 조세 및 회계기준, 미비한 산업인프라, 높은 물가 및 임금수준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 그러나 WTO 가입 과정에서 러시아가 각종 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여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된 결과, 최근 한국의 대러 진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전자·자동차 분야의 대기업들은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현지 그린필드 투자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도 대러 투자에 관심이 높아 향후 투자확대가 예상됨.

나. 기본 협력 방향

-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이제 우리는 한·러 협력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위한 신(新) 복합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WTO 가입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제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됨.
 - 또한 향후 러시아는 유로-퍼시픽(Euro-Pacific) 개념하에 유럽과 아태지역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려는 전략을 보다 강력하게 구사할 것이므로 한국도 이에 부응하는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즉,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신(新)복합전략을 수립·추진해 나아가야 함.
 - 특히, 전략적 상품인 에너지자원의 확보, 남·북·러 가스관 건설 및 전력망 연계, 대륙철도 연결 등 물류교통 연계사업은 정치·경제적 복합전략하에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다. 분야별 협력 증진방안

-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법적·제도적 투명성 제고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대러 무역 및 투자협력 내용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 현재의 주력 수출품에 안주하지 않고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대러 에너지 수입 및 서비스 교역 확대
 - 향후 20년을 대비한 새로운 투자협력이 필요한바, 러시아의 5대 경제현대화 추진 분야(에너지 효율화, 정보통신, 우주항공, 원자력에너지,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한·러 산업협력을 강화
 - 모스크바 등 대도시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글로벌 기업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이제 협력 대상지를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까지 확대하는 지역별 다변화·차별화 전략을 추진
 - 모스크바 KOTRA 산하에 한국기업의 대러 무역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법률지원센터' 설립
 - 시장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현지 KOTRA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러시아의 법률·회계기업,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를 통해 현지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최근 급증하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상호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해야 함.⁵⁾
 - 이는 상호 경제협력의 확대기반 조성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안정에 필요한 러시아의 전폭적 지지를 얻는 외교 안보적 효과도 제공하므로, 관련 부처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WTO 가입 이후 대러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인바, 러시아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간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한·러 FTA 체결을 고려
 - 한·러 양국은 2007~08년에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5) 2009~10년 동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연간 400억~500억 달러로 급증했지만, 2010년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31만 달러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대비 0.001%에 불과함(러시아 통계청).

후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이제 WTO 가입을 계기로 한·러 FTA 협상재개가 가능해짐.

- FTA를 통해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수산물 쿼터 확보, 에너지자원 협력 등에서 현저한 진전을 이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능해짐.
- 러시아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 체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2년 1월 발족하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경제공동구역과 EU, APEC, ASEAN 등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할 계획임.⁶⁾
-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FTA를 적극 추진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기 경제공동구역으로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극동·시베리아 중심의 새로운 '북방 성장 공간' 창출이 필요함.

- 러시아는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 2025' 를 수립하여 이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만간 북극해 항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방에 비해 우리가 먼저 기회를 선점해야 함.
- 이 지역의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원 탐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극동지역~북극해를 연계하여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함께 '북극해 협력센터' (가칭)를 설립
- 향후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 간 고속철도 건설 가능성이 높은바, '한국고속철해외진출협력재단' (가칭) 같은 단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고속철도의 해외진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러시아와 공동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진출을 위한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 을 수립하여 추진
- 중국은 러시아와 '2009~18년간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동북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 을 국가 차원에서 채택하여 추진 중임.
- 남·북·러 가스관, 전력망 연계, TKR~TSR 연결사업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촉진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정부 차원에서 '메가 프로젝트 협력위원회' (가칭)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KIEP

6) 러시아 경제개발부 자료 참고.